

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6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6월 5일

제안 이유

○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
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

○ 지방재정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
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
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주요 내용

○ 조례의 인용법령중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공유재산
및 물품관리법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정비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재산관리의 사무를
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(안 제3조)

○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용도폐지, 용도변경과 관련한
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대상재산 신설 및 가액 변경(안 제5조)

- 신 설 : 특별시(광역시 포함) 소재 5천만원 이하의 재산

- 변 경 : 기타 시·군지역 : 1천만원→ 2천만원 이하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행정재산·보존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을 3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삭제
- 행정재산·보존재산의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필요시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할 수 근거 마련(안 제22조)
- 토지의 지하,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마련(안 제29조)
-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경우 공용면적은 건물 신축시 적용하는 공용면적 비율로 산출할 수 있도록 산출방법 추가(안 제31조)
-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있어 강행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(안 제32조)
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 삭제(안 제39조)
-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중 일부 삭제 및 국유재산과의 균형유지를 위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 조정(안 제40조)
 -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업지역안의 농지를 10,000 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 삭제
 -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삭제
 -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,300 제곱미터이하 시·군의 읍·면지역은 6,600 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(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)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삭제
- 변상금의 정도에 따라 분납 기간 및 회수를 명시하여 주민의 경제

적 부담 해소 및 업무의 혼란 방지(안 제63조)

- 은닉재산 신고시 보상금지금액이 그동안 상한이 없었으나 보상금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(안 제64조)

□ 검토 의견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 공포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토대로 하여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- 본칙 총8장 68개의 조문과 부칙 2개조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내지 제11조에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을, 제12조내지 제17조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, 제18조내지 제23조에서 행정 및 보존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제24조내지 제41조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, 매각, 신탁에 관한 사항을, 제42조내지 제61조에서는 공유임야 및 청사,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을, 그리고 제62조내지 제68조에서는 변상금 부과 등 보칙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현행과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, 안 제11조에서는 재산관리 재원 확보와 재산관리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안 제17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산일은 기부채납일로 기준하되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.

- 또한 안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서는 그 동안 건물 일부를 대부할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대부료를 산출함으로써 공용면적 산출이 번잡하고 어려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공용면적비율을 일률적으로 30%를 적용토록 조정하고 있음.
- 아울러 안 제39조 조성원가 매각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으며, 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인용조문을 충실히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·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음.
- 다만,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현재 관리중인 공유재산 규모중 행정재산, 보존재산, 잡종재산별 현황과 타·시도에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, 아울러 안 제56조 관사 운영비 부담에 있어 연간 소요예산은 어느정도되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